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2276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5232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22766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 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734,1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취지의 자연손해금 기산일 “소장 부분 송달일”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2개 업체는 2018. 4.경 B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의 공동수급업체로 선정되어 그 무렵 부산도시공사와 참여지분율을 피고 28.5%,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업체 각 6.5%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위 12개 업체(이하 ‘공동수급업체’라고 한다)는 위 용역계약 수행을 위하여 각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위 용역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분담할 업무를 지적기준점 측량 및 매설,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총면적 중 위 각 참여지분율에 비례하는 면적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으로 정한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면적 1,235,357㎡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등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다.

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총용역대금 947,532,481원을 위 각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원고를 비롯한 11개 업체에게 각 61,589,611원(≒947,532,481원×0.065)씩을, 피고에게 270,046,757원(≒947,532,481원×0.285)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면적 1,235,357㎡ 중 원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은 192,075.2㎡, 피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은 229,186.6㎡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정에 따르면, 원고의 지적확정측량 분담 면적은 $80,298.2\text{m}^2 (\approx 1,235,357\text{m}^2 \times 0.065)$, 피고의 지적확정측량 분담 면적은 $352,076.7\text{m}^2 (\approx 1,235,357\text{m}^2 \times 0.285)$ 인데, 원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은 위 분담 면적을 $111,777\text{m}^2 (=192,075.2-80,298.2\text{m}^2)$ 초과하고, 피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은 위 분담 면적에 $122,890.1\text{m}^2 (=352,076.7\text{m}^2 - 229,186.6\text{m}^2)$ 미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피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원고가 초과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한 면적에 대한 금액 $85,734,195\text{원} (=947,532,481 \times 111,777 / 1,235,357, \text{원 미만 버림})$ 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동수급업체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중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총면적 중 위 각 참여지분율에 비례하는 면적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수급업체는 이 사건 협정 체결 당시 참여지분율에 비례한 면적만에 따라서는 각 업체 간 실제 지적확정측량 등 업무 분담을 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필지수나 필계점수 등에 따라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피고의 담당 구역을 우선 정하고, 나머지 11개 업체의 담당 구역은 추첨으로 이를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담당 구역 지정 당시 공동수급업체 상호간 각 업체별로 실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 용역의 난이도나 면적에 따른 사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도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여진 담당 구역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산도시공사와 공동수급업체 사이의 총용역대금이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정해졌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업체 내부에서도 당연히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업무 분담이나 담당 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서만 용역대금의 배분이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실제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원고가 초과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한 면적에 대한 금액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